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18호

가락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가락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28일
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○ 해제기한 연장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
가락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송파동 166번지 일대	59,721.63	2024. 8. 5.까지	-

○ 참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(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)으로부터 2년간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.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4)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(☎02-2147-2888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19호

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7월 28일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○ 해제기한 연장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	비고
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문정동 3번지 일대	33,953.7	2024. 7. 19.까지	-

○ 참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기간(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)으로부터 2년간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.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4)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(☎02-2147-290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